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내부 워크숍

- 때: 2011년 1월 7일(금) 오후 2시
- 곳: 전교조 서울지부

1. 학생인권조례의 철학과 열쇳말 / 진행 - 배경내

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 넘어서기

1) 권리 조항별 쟁점 짚어보기 / 진행 - 공현

: 서명 작업에서 주로 받게 되는 질문들 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토론

- 어디까지가 체벌인가? 간접체벌은 체벌이 아닌가?
-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관장을까? 휴대전화 압수는 가능한가?
- 복장 규제 금지는 교복을 입지 말자는 소리냐?
- 두발 길이 자유는 좋지만, 염색까지 허용하자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 학생 신분에 집회는 너무 오버 아닌가?
- ???

2) 학생인권의 부작용(?)에 관한 우려들 넘어서기 / 진행 : 전누리

- 최근 언론의 기획 보도 실태(교사에 대한 폭행, 교실 붕괴 담론 등)의 문제점
- 학생인권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장면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논의 과제]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 폭력적인 문제해결 방식에 의존해온 문화, 교사와 학생 서로간의 불신, 낮은 인권 의식, 교사들의 냉소적 태도 등
-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으로 정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예)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 교사의 자율성을 어떻게 봐야 하나? '조례'는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가?

조례는 교사를 문제집단 혹은 개혁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교사들의 주체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 수업규칙, 핸드폰 이용 규칙 등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는 일이 교육을 인권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3. 학생인권조례, '문제행동'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진행 : 경내

: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이후 '생활지도의 혼란' 또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지도 불가'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그 가운데 정부나 교육청 등에서 조급하게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음. 학생인권운동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논의 과제]

- 상벌점제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키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선도부인가?
- 문제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제도와 강제전학 등 엄벌주의적 대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성찰교실에 간 학생들,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 대규모 강연식으로 내리먹이는 인권교육, 반공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학생인권조례의 이해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1. 학생인권과 교육권

가. 학생인권은 교육권의 필수요소

유엔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국가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존중(respect)의 의무',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보호(protect)의 의무', 그리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실현(fulfill)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교육기본법 12조와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가 학습자의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국가의 학생 인권 보장 책임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선언적 조항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2003년 학생생활지도의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2006년 「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일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 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권장만으로는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보완과 아울러 지방 조례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가 학생인권의 보장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¹⁾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P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4P란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제공(Provision), 그리고 참여(Participation)를 말한다. 18세 미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차별없이 보장하고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인권 실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 모든 과정이 어린이·청소년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1.2차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주요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교육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한 대상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1) 학생인권과 교육권에 관한 국제인권준칙에 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자와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개발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국가인권위원회, 2007) 1부를 일독할 것을 권한다.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협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이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나, 학칙 등 학교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²⁾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권의 실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학생 인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와 ‘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4대 의무(4A)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할 것, 교육기회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차별없는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할 것, 교육의 형태와 내용이 학습자와 보호자가 육체적·정신적·문화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 되도록 ‘수용성’(Acceptability)을 보장할 것,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 최선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용성’(Adaptability)을 보장할 것이 바로 ‘4A’이다.³⁾ 이 가운데, 우리 교육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2항⁴⁾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학교의 규율이 과연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학습의 양과 학교규율의 정도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이나 학교규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은 학교의 자율성을 우리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낯선 일이 아니다. 일례로 「뉴욕시 징계 및 중재 기준(규율규정과 학생의 권리·책임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청 지침을 통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⁵⁾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1996년 2월)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2003년 1월).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52-53항).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 권고 36-3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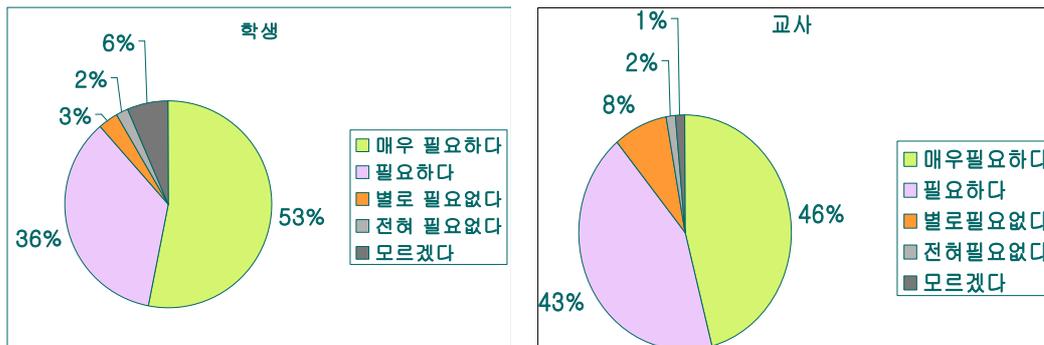
3)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6-7항, 그리고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을 참고하면 된다.

4) “학교규율이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뉴욕시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의 권리로는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차별, 괴롭힘, 편견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권리, 개인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표현 및 개인의 자유(학생회 또는 각종 모임을 구성, 참여할 권리, 학교생활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위원회를 대표할 권리(필요시 투표권도 행사),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여 전 단지를 배포하거나 배지, 완장 등을 착용할 권리,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위험하거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몸 수색 등 부당한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등)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징계조치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성인 또는 대리인과 동반 출석할 권리 등)가 포함된다.

우리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수준이 아니라 조례 제정이 별도로 요구되는 이유는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부 지침들⁶⁾이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위임되는 한편, 학교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까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2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이러한 조치는 단위 학교의 민주적 참여 통로와 의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의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인권이라는 중대 사항을 개별 학교 단위에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야간 12시까지 또는 토·일요일에도 강제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0교시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 쉬는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한 학교 등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부 차원의 각종 지침들이 폐지되고 있는 환경에서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보호 지침을 수립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성을 지닌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교육주체들 사이에 보편적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10월 1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교사 15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53.6%, 교사는 45.8%였고,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35.6%, 교사가 42.9%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학부모도 ‘매우 필요하다’가 26.6%, ‘필요하다’가 61.0%로 집계됐다.



교육 관련 주체들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생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안 민주적 소통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자율’이란 법치(法治)나 협치(governance)가 아니라, 인치(人治)나 지배(domination)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학교의 자율성이 민주적 가버넌스에 기반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6) △수준별 이동수업, 0교시·심야보충과 관련한 학사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 △시설모의교사 참여 금지 지침 △촌지 지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거 지침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8조(교육의 목표) 조항을 통해 교육이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을 위한 교육,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은 도달해야 할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교육권의 핵심적 요소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 역시 공식적으로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는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곧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안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행사하는 기회와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책임감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야 한다.⁷⁾ 또한 ‘법의 지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수적이다.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는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by law)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후자가 실정법에 대한 기계적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국가가 아닌 국민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살피고 실정법에 대한 형식적 적용보다는 법의 이면에 놓여있는 ‘법의 일반원리’에 충실한 법적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법의 일반원리 가운데 최고의 원리에 해당한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살피고 참여할 기회 역시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교에만 내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하여 학교생활에서 준수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과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 학교공동체의 신뢰 회복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 상호간에 불신과 다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높아가는 반면,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융통성 있게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학교가 제시한 규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깔려 있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진정, 민원 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진정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더 이상 시민들이 학교의 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인권의식이 성장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과 진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부담 등 여러 측면을 고

7) “배움에 동기를 부여하고 양질의 교육에 버팀목이 되는 가치(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능력, 능동적 시민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 과정의 행위자인 학생과 교사의 요구가 확인돼야 하며,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학교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권의 행사는 교육당국의 명령 또는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117항)

려할 때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 주요 결정례]

-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결정(2003년)
- 초등학생 일기검사 관행이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육적 수단을 마련하라는 결정(2005년)
- 학생에게 두발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결정(2005년)
- 여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해 생리공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정(2005년)
-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근거도 없이 휴대폰을 수거,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2007년)
- 학생선수에 대한 신체적·성적 폭력 근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발표(2007년)
- 학생에 대한 조기 등교 강요는 학생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결정(2008년)
- 학생에게도 평화로운 학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2008년)
-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에게만 자율학습 전용실(정독실)을 제공하는 일, 성적 우수자반을 별도 편성하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형 공립학원(인재숙)을 운영하면서 성적 우수자만 선발·지원하는 것 등은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2008년)
- 수업 도중 학생을 불러내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결정(2008년)
- 학생 명찰을 고정 부착시켜 학교 밖에서도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2009년)
- 학생 비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정(2010년)

2. 학생인권과 교사

가. 교사의 정당한 권리란 무엇인가

교사의 권위는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반면, 권리는 권리의 주체, 내용, 그리고 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할 의무 대상자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권리 개념에 기초할 때 교사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교사라는 신분(직책)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일할 권리(노동권), 그리고 교수권(수업권)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권리 모두가 교사에게는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박탈당한 채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수권(수업권)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교육의

자유'와 '학생에 대한 평가권' 역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직권(職權)인 교육의 자유가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교육 바깥의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교육이 '주입'이 아니라 '서로 배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교권 논의는 '학생 지도권' 또는 '학생 통제권'에 주로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최근 참교육연구소의 의식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침해'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교권 침해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상당수가 교과부, 교육청, 학교관리자를 지목했다는 사실,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의 자율성과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 개선을 꼽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52.5%	34.6%	12.0%	0.9%
교육청	40.2%	43.3%	15.6%	0.9%
학교관리자	36.7%	40.5%	20.7%	2.1%
학부모	18.4%	43.8%	33.4%	2.2%
학생	10.2%	29.6%	44.1%	16.0%

○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사)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행정 개선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 인정
3.0%	60.9%	69.4%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	입시경쟁교육의 해소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 창구 개설
5.3%	38.2%	4.4%

일명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에 이어 9월 초등학생 운동선수 체벌 사망사건, 10월 수원에서 발생한 '떡때' 체벌 사건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학생인권이 학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사집단의 문제인 양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좀더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서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일 것이다.

나. 학생지도권, 교사의 권리인가 의무인가?

교사의 학생 지도권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책무가 있다. 만약 교사의 지도 내용과 방식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교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교사가 정당한 지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공격적(문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입을 수 있는 일종의 '산업재해'(노동재

해)와 같은 것이다. 학생의 공격적 행동 이면에는 다양한 맥락과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교사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변화를 기다려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시스템 마련이 긴급한 교육 의제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을 ‘교사의 학생 지도력 문제’로만 접근해 왔고, 그에 따라 교사들이 체벌이나 강압적 교육 수단을 통한 순간적 행동 통제에만 매달리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 행동을 제압하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 교사’라는 낙인까지 부여받아야 했다. 문제의 뿌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교사의 신분도 안정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이익에 대한 압박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교사의 ‘학생 지도권’이 과연 권리인지 아니면 교사에게 부여된 ‘의무’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부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한 사건이나 올 9월초 한 사립학교 교장이 학생들 복장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 지도권은 교사에게 부여된 의무인 측면이 더 강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2008년 강릉에서 학생회장 선배에게 맞아 후배가 사망한 사건은 학교의 비합리적 규정과 폭력적 선도가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증가는 물론 학교 현장에 어떤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조차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를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었다.⁸⁾ 그러므로 학생인권은 학생지도권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부여된 과중한 ‘학생 통제 업무’를 줄이고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화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의 증가 역시 학교 안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교육에 힘써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교권 실추 사건’으로 공개된 사건들도 살펴보면, 피해 교사가 신규·여교사에 집중되어 있음⁹⁾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교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기준에서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안 폭력 문화를 바로잡고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먼저 공식적 가치로 인권을 선언하고 예방 교육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학생인권조례는 아래와 같은 교육 철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 보호 입법이다.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열 가지 열쇳말

- 8) 조희 시간 불참자를 단속 중이던 강릉 K고 학생회장은 교실에 남아있는 2학년 후배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후배를 숨지게 하였다. MBC PD수첩은 이 사건을 후속 취재하였는데, 당시 인터뷰에 응한 3학년 학생 상당수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선배에게 대든 후배는 손을 봐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평소의 인식이 비극적인 사건을 키웠다.
- 9) 지난 2010년 7월 19일 수원 D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인 A모 여교사가 평소 행실이 불량한 B군을 꾸중하던 중 B군이 반발하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말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누나 사귀자’라면서 희롱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 학생을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 대하는 학교
2. 참여와 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4. 감당할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5.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학교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존중하는 학교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9. 교사의 권한과 역량을 존중하는 학교
10. 권리를 회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첫 번째 원칙은 학생 역시 권리의 존엄한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학창시절은 인권이 유보된 대기실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8>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첫째 원칙의 거르개에 학교를 집어넣어 볼까. 학생의 인격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언어폭력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관행들,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제 소지품검사 등이 걸러내야 할 찌꺼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학교가 참여와 결정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 학생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고 변화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장식에 불과한 참여, 이름뿐인 참여, 결과를 이미 조작해둔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5>에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가장”하지 말고 “적절한 비중을 부여”할 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원칙의 거르개로 학교를 걸러볼까. 왜 학생의 동의가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만나, 학교생활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나, 머릿수 채우기 위해 학생을 이런 저런 행사에 동원하는 게 교육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셋째,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4년 12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E/CN.4/2005/50)를 통해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을 성적순으로 갈라놓고 우등생만이 학교의 명예를 빛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정체성을 탐색할 기회가 자유롭게 열려 있는지, 학교 환경과 교사들의 발언이 여성의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를 세 번째 원칙은 되묻고 있다.

넷째 원칙은 교육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정당한 교육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다. 학생은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동료들 고발하고 적발하도록 만드는 선도부의 존재,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왕따, 건디기 힘든 학습부담, 운동기계로 내모는 학생선수 육성 관행 등과 단호히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

다섯째 원칙은 ‘책임 먼저, 자유는 나중’이라는 공식의 잘못을 꼬집는다. 책임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은 질서에 대한 강박증이나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행사

하는 경험으로부터 길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의견을 자유롭게



▲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모습. 선도를 맡은 학생들이 일일이 친구와 후배들을 쫓아다니며 동태를 살펴 보고한다. [출처: 교육희망]

표현하는 것을 격려 받을 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힘도 기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는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과도한 규정으로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생각을 거짓으로 고해야 하는 학교, 전단지나 서명용지 하나 돌리면서 쫓겨날 각오까지 해야 하는 학교는 과연 정의로운가.

여섯째 학교는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인 만큼, 학교에 오기 전과 학교를 떠난 후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젯밤 술 취한 아버지에

게 두들겨 맞고 휘청거리는 마음으로 겨우 학교를 나온 학생을 수업 태도 불량으로 벌주는 학교, 도와달라고 보내는 학생의 간절한 눈빛을 읽지 못하는 학교, 최저임금도 안 되는 험값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서 과연 돌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일곱 번째는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학생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었나’뿐 아니라 ‘어떻게’ 주었는지도 함께 질문되어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14>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건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상호불가분성의 원칙은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살핀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자유를 구석에 몰아넣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다. 이를 테면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놀지도 못하게 하는 조치는 과연 정당한지 말이다.

여덟 번째 원칙은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이다. 학생 인권 보장을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미뤄두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질문을 옮겨야 한다. 학교 안 자원만으로 부족하다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적극적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 밖 자원을 끌어들이면 어떨까.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를 교실수업으로 초대하는 학교, 지역사회의 현안에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학교, 법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을 적극 소개해주는 학교에서 학생은 연대의 가치를 자연스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홉 번째는 교사를 학생인권의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로 초대하려면 그들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2000년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다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은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



▲ ‘똥 쌀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앞 시위에 나선 총암고 교사들. 학생인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사들의 권한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출처: 교육희망]

어내려면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700명의 학생이 단 한 개의 화장실밖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진 충암중고의 현실은 징계 위협에도 거리로 나선 교사들의 용기 덕분에 알려질 수 있었지만, 그런 용기를 모든 교사에게 요구할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고 길들이는 교원정책은 교사의 인권은 물론 학생의 인권까지 후퇴시키게 된다. 인권을 옹호하는 교사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 관련 분명한 법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다.

마지막 원칙은 권리를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학생은 인권침해를 겪었다 해도 침해를 호소할 기회도, 그 호소를 경청받는 경험도 갖기 힘들다. 2006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A/61/299> 보고서는 ‘아동과 그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모든 아동이 그 절차를 알고 있어야’ 아동폭력에 맞설 수 있다고 말한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학생을 침묵과 체념 속에 가둬두게 하는 것은 또 한 번 인권을 침해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읽을거리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의미하는 것¹⁰⁾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학교에서 배운 것

유 하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나 좀 도와줘야겠어." 2009년 여름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광노현 교수였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회에 들어와 도와달라는 얘기였다. 뭔가 시름하면서도 달달한, 이름 모를 음료수를 꿀꺽한 느낌이랄까? 10년 넘게 활동을 해오는 동안, 학생인권은 늘 '장외선수' 처지였다. 썰렁한 잔칫집 풍경마냥 학생인권은 교육정책은 물론 정책을 풀무질하는 교육운동에서도 즐겨 찾지 않는 문제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약간 훈풍이 부는가 싶은 적도 있었다. 2005년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결정처럼 몇 가지 의미있는 기준이 쌓이기 시작했고,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시도됐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몸을 사리기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 교체 이후 아예 맛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반가우면서도 가능할까 미심쩍은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나올 수밖에. 교육청이 나선다고 새로운 길이 열릴까? 1998년 인권대통령을 내세웠던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 이 글은 '교육공동체 벗' 창간준비호에 실린 글입니다.

학생인권선언을 만들려던 교육부 시도가 어이없이 백지화됐었는데……. 그냥 몇 사람 모여서 보고서 만들어 올리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닐까?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 해도 의회가 설득될까?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 지랄 맞은 학교가 바뀌거나 할까? 모든 게 미심쩍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수원행 기차에 벌써 오르고 있었다. 서울과 수원을 수십 차례 오가면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로부터 1년 반 가량이 지난 지금, 학생인권을 잠재워 온 봉인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을 내세운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여럿 당선됐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운데, 추석을 얼마 앞두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서울, 광주, 전북 등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에서는 조례 제정에 앞서 하반기부터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물결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다다른 곳이 어디일지 짐작하긴 힘들다. 장외 선수였던 학생인권이 장내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교권이 무너진다고, 애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아우성에서부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손질해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려는 목직한 반격까지 공세가 만만치 않다. 학생인권의 부작용을 과장되게 부풀리고 사건화함으로써 진보 교육감들은 물론 교사 운동, 마침내는 진보와 인권의 가치 자체를 공격하는 일들도 속속 기획되고 있다. 게다가 현장의 준비 없이 밀고 들어온 정책을 타타는 교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런 악조건에서 이제 갓 입학한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으로, 사람들의 삶속으로 걸어 들어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도대체 학생인권조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이토록 엄청난 반발이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학생인권조례가 던지는 질문들

학생인권조례를 훑어보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 조례에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어떤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담겨 있다. 정기적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학교의 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해야 할 과제가 담겨 있다.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이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구로 '학생인권옹호관'(일종의 옴부즈퍼슨)도 설치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렇게 단 몇 장의 문서로 끝나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학생을 바라보던 관점, 학교 하면 떠오르는 익숙했던 관행들, 무엇보다 현 교육의 프레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소로우는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참뜻을 묻고 있듯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참뜻을 묻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게 학생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해온 문서였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그 학교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거는 문서다. 많은 이들이 교육을 걱정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그 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폭력들이 진정 교육이란 이름에 걸맞은 것이었는지를 묻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교육, 체벌·폭언·차별 등 인간적 모멸이 판치는 교육, 거짓 동의와 자백이 강요되는 교육, 격려와 소통은 온데간데없고 강압과 지시만이 지배하는 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는가 하는 질문 말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던지는 질문만으로는 학교가 크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도 뿌리 깊다. 학생인권이 제한되어야 할 이유를 만들기란 너무나 쉽고, 인권에 관한 한 학생도 교사도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피해나갈 구멍을 찾는 일도 참으로 쉽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제한은 가능하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학교 일과시간 전체를 수업시간으로 확대해석하거나 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을 손질하는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 차별이 금지된다고 하자, 상벌점제와 각종 수업규칙으로 학생을 통제하려는 또 다른 법치의 물결도 일고 있다. 교문지도가 공격받자 똑같은 지도의 공간이 현관으로, 교실로만 옮겨버리는 일도 일어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인권조례에도 불구하고 복종만이 강요되던 기존의 교육은 기어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조례 자체가 아니라, 조례를 통해 바꾸고자 했던 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환기하는 일이 아닐까?

많은 이들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면 사교육비가 늘면 어쩌나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학원과 피시(PC)방 외에는 갈 곳이 없는 황량한 심대의 삶이어야 하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차별이 사라지면 교사가 일부 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제지할 수 없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외부의 '통제자'를 불러들이지 않고는 불안해하는 학생들 아닌가? 많은 이들이 학교 안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가 시끄러워질까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날개로 흩어진 채 변화를 구걸하거나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낙담 밖에는 모르는 학생들 아닌가? 많은 이들이 두발 규제를 풀면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될까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두발 규제와 함께 학생들이 통제하는 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보다 자기가 통제되어야 할 이유를 찾는 데 익숙해지는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학교가 정치에 휩쓸릴까 걱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중립'을 가장하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데 익숙해지고 결국 학교가 독점하고 있는 진실만이 유일한 진실로 남는 것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는 이처럼 많은 질문들을 이끌고 다닌다. 어쩌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질문들이 낳게 될 변화 아닐까? 모든 학생을 고루 지원 하는 교육이 아니라 가혹한 경쟁시스템 안에 학생들을 집어넣고 될성부른 떡잎만 숨어내고 있는 교육의 진실이 파헤쳐지는 모습, '씩수 노란 떡잎들'이 일찌감치 잘려나가지 않고 자유네 참여네 하면서 왈왈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자유의 공기를 흡입한 학생들이 정말로 성숙해질까봐,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까봐, 통제와 폭력에 교육이라는 권위를 부여해준 독점적인 권력이 무너질까 두려운 것 아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의미

사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제대로 던져지지 못했다. 고백하자면 조례제정 위원으로 참여할 때 가장 큰 관심은 인권활동가로서 그동안 이야기해 온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괜찮은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례 제정 권한을 거머쥔 다른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를 걱정했다. 생활지도부장으로 잔뼈가 굵은 교사 출신 위원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

해 여러 차례 워크숍과 논의를 거듭하면서 비교적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조례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가까스로 합의를 본 조례 초안을 교육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염려됐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꾸준히 들으려 노력했지만, 교육청이 주최한 간담회와 토론회가 그리 깊이있는 논의를 할 만한 공간은 못 되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꾸려 이 조례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지만, 학교 현장까지 그 흐름은 미치지 못했다. 교육운동진영이 자기 운동의 의제로 삼고 적극 뛰어드는 모습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학생인권 정책'이 가져올 파장을 가장 깊이 꿰뚫어본 이들은 다름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 잃을 게 많은 이들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떠오르자 그들은 조례를 불청객 수준을 넘어 폐강도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인권 정책을 내세웠던 다른 교육감들도 그 정책의 깊은 의미를 몰랐을 수 있고, 그토록 많은 반발이 터져 나올 줄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는 일이 도대체 무얼 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잃을 게 많은 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 교사들이 '지지하는 척하기' 내지는 '시기상조론'에 여전히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다. 현장의 준비됨 없이, 교사들의 지지 없이 학생인권 조례는 결코 학교에 뿌리 내릴 수 없다. 물론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졌던 것은 맞다. '위로부터 주어진 개혁'의 전형적 한계를 학생인권조례는 분명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푸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위기감까지 들게 만든다. 언제까지 푸념만 하며 한발 뒤로 물러설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괜찮은 교육감 아래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작품이 아니라, 학생인권운동의 길다면 긴 역사가 녹아있는 성과물이다. 그동안 학생인권 운동은 외로웠고 주변부의 목소리였기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학생인권운동의 요구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는 '하면 좋지' 정도의 추상적 지지만 보내다가 이제 그 운동이 중요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순간 '준비부터 하고 나중에'를 이야기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동안은 왜 준비하지 못했었나? 어쩌면 '나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머뭇거릴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하지 않다는 것 아닐까? '완벽한 준비'와 '조례 이후의 혼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이 필요한 것 아닌가?

감옥에 갇힌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의 시민권 보장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백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누구에게는 시기상조가 누구에게는 오래된 간절함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변화에 대한 시도는 시기상조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분리의 괴로운 고통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악랄한 폭도가 여러분의 부모에게 합부로 린치를 가하는 것을 볼 때, 증오로 뿔뿔 뭉친 경찰이 흑인 형제자매를 욕하고 발로 차고 야만스럽게 다루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별조차 받지 않을 때, 번영하는 사회 한가운데서 숨 막히는 가난으로 허덕이는 2천만 흑인들을 볼 때, '백인 전용', '유색인종 전용'이 표시된 지긋지긋한 간판을 매일 보면서 수치심을 느낄 때, 백인들이 여러분을 '깜둥이'라 부르고 나이에 상관없이 '놈(boy)'라고 부를 때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발의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의 본 무대는 사실 조례제정을 주민발의로 일구어내고자 선택한 서울이 아닐까 싶다. 서울에서는 3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꾸려 서울 시민 1%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1월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학생인권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청소년·인권 단체들도 있지만, 이 운동의 의제에 이제 갓 공감하기 시작한 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다.

주민발의 서명에 주어진 시간은 단 6개월. 이제 불과 3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 있다. 학생을 불신하는 데 익숙해진 사회에서, 경쟁교육의 가치가 하늘을 찌르고 탈락에 대한 공포로 인권을 기꺼이 반납하는 데 익숙해진 교육현실에서 8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발의서명을 얻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는 중이다. '학생도 인간'이라는 소박한 진실과 '학생이기에 더욱 풍요로운 권리를 맞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는 믿음은 '애들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과 '애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의 벽 앞에서 나아갈 길을 가로막히고 있다. 학생이 자유와 참여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감당할 만한 배움과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 차이가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복원된 학교. 어쩌면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운동마저도 체념하는 데 익숙해진 현실에서 '다른 교육'에 대한 열망부터 환기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2010년 6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건 학생회장 후보가 학교의 탄압으로 징계위기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하지 말라는 교장과 학생부장의 '지도'에 따라 후보 연설문을 수정해야만 했던 학생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학교는 학생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하고자 했다. 이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끈질긴 문제제기, 주위 단체들의 비판, 교육청의 해결 노력으로 학교가 학생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와 같은 결말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학생회장 후보를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비록 좌초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런 학생들에게 열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닐까?

학생인권 침해는 학생에 대한 불신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이란을 배경으로 한 만화 <페르세폴리스>에서 주인공 마르잔은 말한다. 집을 나서면서 베일은 잘 썩워졌나, 화장이 너무 진한 것은 아닌가, 나를 때리면 어쩌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생각의 자유는 어디로 갔지, 내 삶은 살만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던지지 않게 된다고. 질문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곳에서 교육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학생을 침묵시켜온 '학생 지도·통제권'이 교사의 권리였는지, 아니면 지금의 교육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교사에게 주어진 의무였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물어보아야 한다.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 문제로 무더기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짐작 가능하다. 학생이 미성숙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미성숙한 학생들을 감독해야 할 교사 역시 미성숙을 강요받고 정치적 자유와 같은 중요한 권리마저 박탈당했던 것은 아닌가? 가혹한 경쟁과 훈육 시스템에 학생들이 불모로 잡혀 있는 사이, 학부모 역시도 자녀를 양육하고 탈락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삶에 불모로 잡힌 것

은 아닌가?

소로우는 노예제의 문제점을 계속 토론만 하고 있는 한 변화는 없다고, 수만 수천 명이, 아니 단 한 명이라도 노예를 소유하기를 멈출 때 노예제는 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은 자신을 노예로 삼고, 교사는 학생과 자신을 노예로 삼고, 학부모도 자녀와 자신을 노예로 삼는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한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럼에도 최근 '기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학생의 교사 폭력 사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교사의 참다운 권위는 바로서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수업 분위기가 이미 엉망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마음 들 곳 하나 없고 폭력에 멎은 학생들이 '핫 버튼'(Hot Button)을 누르는 교사에게 '대드는' 일들은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그 모든 현상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보도들이 줄을 잇는다. 학생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교권'만을 내세워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몰고 올 결과가 무엇일지 암담하다.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면서,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런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학생들이 과연 교사를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 못 때린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요청도 거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학생들이 맞지 않으면 교사가 지시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체벌이 끝나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교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때리냐 때리지 않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곳에서 교육은 가능한가? 사실 이런 현상들은 '체벌의 시대, 폭력교육의 시대를 보내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끝물 장면'이지, '학생인권 시대의 서막에서 나타나는 장면'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행의 시대에는 장면들이 겹쳐 떠오르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내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생각의 혼돈을 비집고 '기존 교육으로의 회귀'를 외치는 이들이 맹렬히 일어서고 있다. 학생이 생각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싫은 학교가 교사가 생각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과연 반길까?

울산에서 만난 한 내공 찬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교장이 점심시간까지 반에 들어와 머리 잡고 자습하라고 야단치고 간다고 불평하기에 교장실 가서 항의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못하겠대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지금 교육이 하는 짓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는 시간, 들어올 때마다 했던 말들을 꼬박꼬박 적어두라고 했지요. 교장실에 들어가 우리 애들이 다 기록하고 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교장이 우리 반은 건드리지 않더군요." 서울의 한 청소년은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보니 괜히 눈물이 나대요. 학생인권 주장이 동물과 인간의 경계에서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싶어서……. 그리고 나니 조례가 말하는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얼마 전 밀양에서 만난 교사 이계삼은 이렇게 말했다. "학생인권으로 인한 가장 비싼 부작용도 가장 싼 폭력의 교육보다는 낫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빛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학생인권조례 운동, 아직은 포기하기 이룰 때가 아닌가 싶다.

<읽을거리 3>

올타리 대신 철조망이 된 공교육 일제고사 강행...아이들에게 끼칠 심리적 영향

<여성주의 저널 일다> 최현정 ✉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꿈꿔 봅시다.

글과 수 개념, 기초과학이론, 역사를 배우고요.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우고 시간을 지키는 법도 배우겠지요.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는 방법도 익힐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게 되고, 친구와 힘을 모으고,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을 배워도 좋겠습니다. 게임에서 졌을 때 패배를 인정할 줄도 알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받는 경험도 쌓고요. 신나게 노는 법도 학교에서 익힌다면 좋겠지요!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미술작품도 만들고,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건강한 밥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책에 나오는 유적지를 찾고 예술작품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또 무얼 배우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란 해볼수록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전국학력평가, 교사해임...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시험을 하나 더 늘리고 과목성적에 따라 아이들을 줄 세우며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로 이름 붙이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을 시작하면서 자기 실력을 또래들과 비교하려는 모습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발달과정 상 다방면으로 배우는 시기이므로,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무엇을 잘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못하는 사람인가를 인식하게 되지요.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성장과정에서 이 시기의 과제를 무사히 통과한 아이는 근면성을 키우고 노력을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여기서 좌절한 아이들은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주로 학교 학습을 전면화시키기 때문에, 학교학습이라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자기 확신과 주도성을 지니고 자아를 실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육환경을 결정짓는 기관에서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좁디 좁은 영역에 한정하여 줄 세우기 식으로 평가를 한다니 큰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더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학력평가와 체험학습의 선택권을 제공한 선생님들이 어이없이 해임당하는 사태를 보자니 말입니다. 바로 교육철학이 부재한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육환경에 아이들이 대면한 현 상황입니다.

교사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설명을 제공하고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고,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면서 선택한 실천의 교육현장은 교사해임이라는 결과로 왜곡되었

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재한 교육청과 이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른들의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모험과 역할모델이 부재한 학교



▲ 새 입시제도 발표에 반발하는 학생들 (2005)
© 일다

학교는 아이가 성심껏 판단을 내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역량을 쌓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배움의 공간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판단의 주체로 자라고, 자기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지는 행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맹목적 관료주의와 눈먼 복종에서 아이들은 몹시도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 신념, 철학, 숙고와 실천이 부재한 채 권위에 굴종해야만 하고, 신념으로 선택하고 실천했을 때 처벌이 뒤따르는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정체성을 발달시키거나 희망을 꿈꾸기란 어렵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권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시도하여 정체성을 설정해 나갑니다. 그렇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지요. 십대 시기 이러한 갈등과 위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탐색을 처벌하는 환경은, 아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막습니다. 교육환경은 아이들이 다양한 가치를 시도하는 현장에서 안전하고 유연한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가시가 뽕뽕한 철조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역할모델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을 세워주는 누군가는 몹시도 절실합니다. 아이는 그를 존경하고 동일시하면서 자기 이상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에서 동일시한 인물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아이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동일시하면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도 키웁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의 모습을 따르면서 스스로도 가치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자기 사랑의 기반은 이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명품과 메이커를 사달라고 조르면서 가짜 자기를 욕망할 필요가 없을 테지요.)

억압과 획일성이 만연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은 건강한 자기 사랑을 키우거나 정체성을 다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한 모험과 도전의 시도가 처벌받고 홀탕

한 역할 본보기가 부재한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은 어디로 이상향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관료주의적 교육환경은 사회를 그늘지게 만든다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찾아 보니 결국 의도치 않게 히틀러 시대의 심리학 연구를 들춰보게 되어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히틀러 시대의 참혹함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했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연장선에서 작동하는 교육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몰살이 일상적인 관료주의 절차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은, 나치 홀로코스트의 가장 충격적이고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가폭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관료주의는 국가폭력의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합니다. 폭력적인 정권이 물러나도 사회가 바뀌지 않는 것은 기계적인 관료주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권위주의가 지배하고 관료주의가 팽배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심리학 문헌은 권위주의 환경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양산한다고 말합니다. 아도르노라는 심리학자는 억압된 아이들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로부터 파생된 분노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복종을 강요하는 교육환경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유발시킨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권위주의의 희생양은 결국 그 자신이 사람을 서열화하고 편견을 지속시키는 권위주의의 실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료주의는 아이들의 건설적인 사고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관료주의는 가치체계의 숲을 보지 못하게 하고 도덕적인 판단력을 가립니다. 관료주의적 사고양상은 편협한 시각에서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판단 내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융통성 없이 경직되고 기계적인 사고패턴을 굳히고, 대안을 섭렵하는 열린 태도를 막습니다.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 결합한 공교육 환경이 아이들의 인성발달에 가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환경이 인간성을 상실한 자본주의 사회와 만날 때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서열화하는 권위주의적 성격, 경직되고 기계적인 사고양상은 한국사회 자본주의 땅 위에 더 많은 곳을 그늘지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네 학교는 왜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아이가 그것을 경험해야만 하게 만들니까. 학력평가를 선택한 아이도, 체험학습을 선택한 아이도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역할본보기가 되어주었던 존경하는 선생님들, 힘을 내주시어 더 빛나는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읽을거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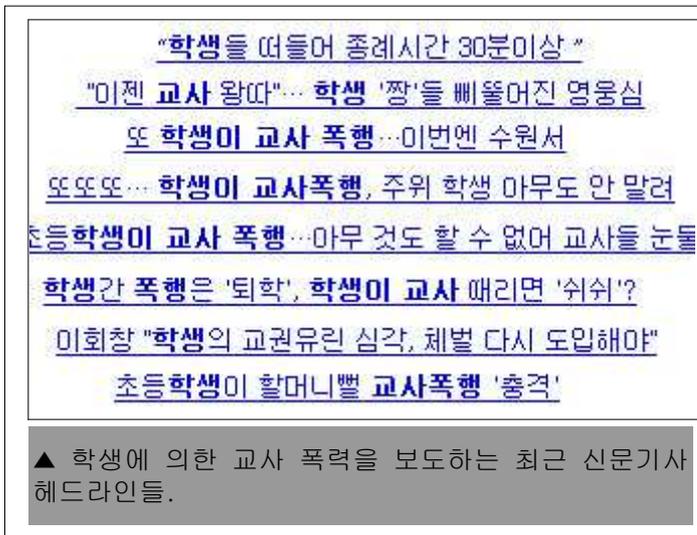
‘교사 폭행한 학생’ 선정적 언론보도 문제 있다
왜곡된 보도로 학생인권에 대한 건강한 논의 막고 있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공현 ☒

※ 필자 공현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입니다.-편집자 주

최근에 언론에서는 연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라 '교권 실추'를 우려하며 학생인권 보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유통되고 있는 교권 실추 담론은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

‘요즘 학생들 무섭다’ 부르짖는 언론들의 오류



사실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교사를 폭행할 학생들의 수란 극소수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만 해도 몇 십 건도 채 되지 않으며, 전 교조나 교총 등의 교원단체들이 발표하는 '교권 침해' 건수를 봐도 몇 백 건도 채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교권 침해'는 폭행 외에도 말다툼이나 욕설이나 소극적 저항, 학생들이 교사를 놀리는 것 등등도 포함된 경우가 많다. 몇 백 건이면 많은 것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대략 500만 명이니, 몇 백 건이면 소수집 아래 두 자리까지 동원해야 할 수치이다.

오해는 마시기 바란다. 0.01%이든 0.1%이든,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적 현상이고, 또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이 대체로 증가 추세인 것도 맞다. 그러나 적어도 0.1%나 0.01%를 가지고서 그 집단 전체를 문제집단으로 낙인찍거나 호들갑을 떨면서 체제의 위기를 예언하는 것은 오류이고 과장이다.

지금 몇몇 언론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를 찾아서 보도하며 교육의 위기를 부르짖고 “요즘 학생들”의 무서움을 설파하는 모습이 딱 그렇지 않은가? 사실 지금처럼 몇 년 전 몇 달 전 사건들까지 지역을 막론하고 찾아다닌다면, 거의 1년 내내 그런 선정적인 보도로 지면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화’된 교사 폭력

그런데 반대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자. 2010년 10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와 참교육연구소에서 전국 교사 14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약 70%가 체벌을 한다고 응답했다.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교사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20%의 교사들은 체벌을 ‘자주’ 한다. 전체 교사의 수가 대략 40만 명이니, 집단에 이 비율을 적용시켜보면 $400,000 \times 70\% = 280,000$. $400,000 \times 20\% = 80,000$. 28만 명의 교사가 체벌을 하고, 8만 명의 교사가 ‘자주’ 체벌을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칙이나 한계 없이 ‘자유롭게’ 체벌한다고 답한 교사도 3.8%나 되니까, 이 역시 1만 명이 넘는다.

게다가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사 1명은 학생 수십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학생 1명이 교사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폭력의 영향력은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체벌금지 이후에도 여전히 체벌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추적하기보다는 굳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의 선정적인 몇몇 사례들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언론은 얼마나 공정한 것일까.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일상이라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것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센세이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전형적인 황색 언론의 논리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폭력 행사는 문제'



▲ 2006년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열린 십대들의 '가면' 기자회견.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십대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 일다

나는 학생인권운동을 하면서 지난 몇 년 간 교사가 학생의 뺨이나 머리를 때린 사건, 체벌 중에 학생이 골절상을 입은 사건 등 수십 건의 ‘선정적인’ 체벌 사례들을 접해왔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사정이나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전혀 공론화하지 못한 사례들이 태반이다.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맞는 것은 잘 문제가 되지 않고 교사 집단 전체를 낙인찍을 이유도 되지 않으며 교사들의 인권을 부정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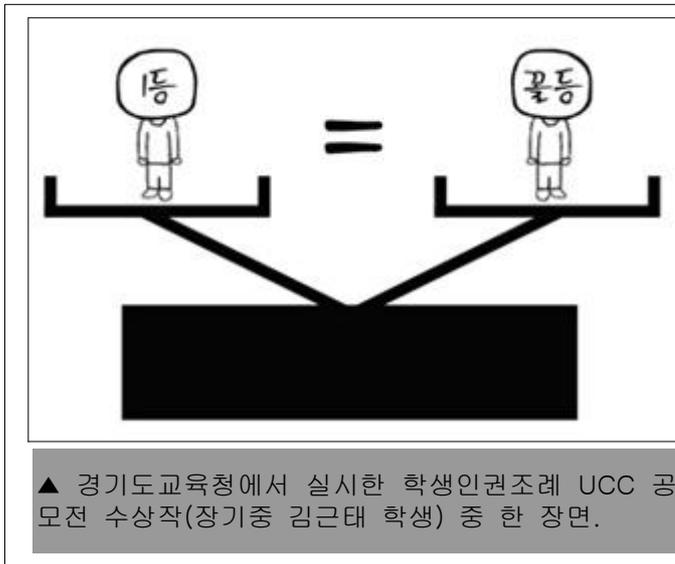
그러나 어찌다가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고 학생 집단 전체를 욕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부정할 이유가 된다. 그 모습이 이미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쓰고 있으니 학생들도 교사들에게 폭력을 쓰는, 폭력과 폭력이 맞부딪치는 교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학부모이든 누구든,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별개로, 일방적으로 선정적인 사례들만을 부각시키며 어떤 사람들을 문제집단으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폭력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 언론들은 정작 그런 식의 보도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들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해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때문에 지금처럼 선정적 사건들을 캐내서 계속 뿌려대기만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은, 불공정하며 무책임하다. 혹시 그 몇몇 언론들의 그런 보도 방침이야말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꺾어놓기 위한 ‘계산’에 따른 것은 아닌가?

‘학교 붕괴’의 진짜 이유



한국의 학교 교육이 붕괴해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요즘 애들이 이기적이고 선생님을 우습게 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연일 교사를 폭행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학교 붕괴의 상징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더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는 학생들, 학교가 부여하는 과업과 수행하는 교육 활동에 냉소적이거나 불참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학교 풍경이 되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소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 자체를 보이콧하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례 등은 그것이

고 있는 이 현실이 학교 붕괴의 근본적 현상이고, 극단적으로 드러난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현상에 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육이 노골적으로 계급재생산의 도구가 되고 학교에 차별과 억압이 심할 때, 학교 교육과 사회 현실이 학생들에게 삶에 관한 희망을 주지 못할 때, 학교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학교 수업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주지 못하고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할 때 - 이럴 때 학교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이유를 잃고 학교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미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이야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학교 붕괴’ 담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입시경쟁, 취업경쟁의 모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는 ‘학교 붕괴’ 현상을 확산시키고 가속화시키고 있다. ‘승자독식’의 원리가 득세하고 학교는 입시·취업기관 혹은 졸업장 발급 기관이 된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열의를 갖고 따르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나 또한,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부동산 투기나 해라.”라고 대놓고 말하고, 학생들은 성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

통제와 억압, 경쟁 강화로 문제 풀 수 없다

이와 같은 ‘학교 붕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뭔지, 여기에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입시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평준화라거나 복지정책 및 경제정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커다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안교육이나 탈학교론, 공교육 재편론 등 여러 가지 교육계 내에서의 논의들이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 그리고 학교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은 ‘학교 붕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학교생활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 학생인권 보장이야말로 학교가 가기 싫고 믿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좀 더 재밌고 자발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바뀌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누구든 진정으로 학교 교육이 붕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학생인권조례, 교육의 숨통 틈을 것" [기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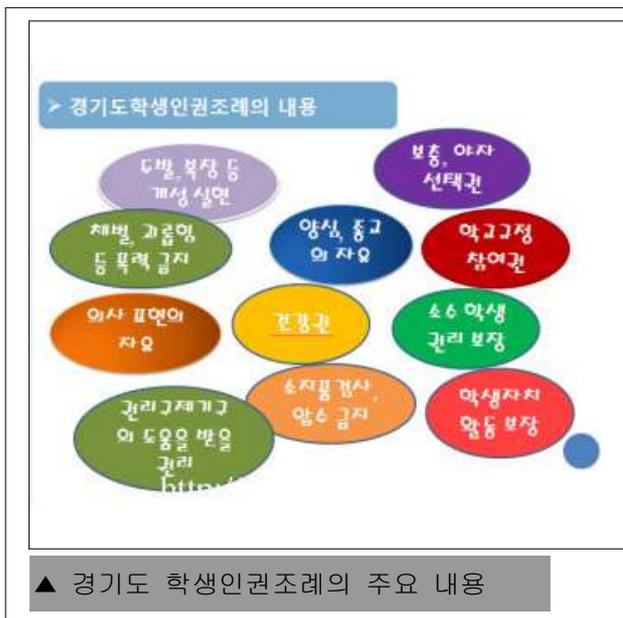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영선 ✉

[편집자 주] 필자 조영선님은 경인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회원이기도 합니다.

6.2 지방 선거 이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고,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서울에서도 최근, 초등학생에게 교실에서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가한 동영상 이 인터넷에 공개돼 화제가 된 일명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학생인권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사실 전 국민의 인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전 국민에게 당연하게 보장된 인권이 유독 10대 학생들에게만 교육의 이름으로 제한되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학생다움'이라는 미명아래 똑같은 머리와 복장을 요구 받고, '사랑의 매'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폭력이 용인되어왔다. 더 이상 이러한 것이 '교육'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될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법의 내용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담은 조례의 형식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고자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선동조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성향의 신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선동조례'라며 이상한 색깔을 덧씌우고 있고, 포퓰리즘에 근거한 무분별한 정책이라며 진보교육감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

또한 두발과 복장자율화 등 개성의 실현이 빈부 격차를 드러낼 것이며 보충야간자율학습 선택권이 사교육을 더 기승을 부리게 할 것이라는 등,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등 계속 탄죽을 걸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제'며 '자율형사립고'가 확대되면서, 어느 학교 학생인가를 보여주는 교복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드러내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대졸자의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른 진로 교육은 도외시한 채 강제 보충과 야자를 통해 학교를 대입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가?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학교에서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권이 추락한다고 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 머리나 치마 길이를 재러 다니느라 바쁘고, 학생들에게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아내 야간자율학습에 남게 하느라 수업이나 상담에 힘을 쏟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제고사나 모의고사 등 일제식 문제풀이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교육과정 하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반수 학생들이 엎드려 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풍경이야말로 교권 추락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를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교권’은 교육과정편성권이나 평가권이 아니라 오직 ‘학생지도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억압할 권리인 것이다. 교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체벌금지’를 교권침해로 보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어느 민주국가에서 다른 존재에게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힘에 ‘권리’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이것은 결국 학교라는 사회가 ‘폭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사회임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일 뿐이다.

교사를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필요해



▲ 여교사에게 한 남학생이 '누나 사귀자'고 희롱한 사건은 힘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학교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여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모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누나 사귀자'고 희롱했던 사건은 이런 힘의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여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힘의 구조로 유지되는 학교를 그대로 둘 때, 교권 역시 힘에 따라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사는 교육자라기보다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새끼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용의복장 지도를 위해 학생들 앞에서 교장이 교사를 체벌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들의 창조적 역량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하여 정당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교사들 8명이 해임, 22명이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학생을 교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백치로 보기에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이렇듯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학생들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침묵의 교실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사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이미 보장되었을 것이다.

흔히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던 시절에 여성의 권한이 제한된 이유는 ‘여성들이 미숙하고 판단력이 없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은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나가야 할 시기에 자신의 몸조차 ‘학생답다’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재단되어야하는 현실이 청소년의 미성숙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학생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 백치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에 숨 쉴 곳을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교사들을 간수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좀비에서 인간으로 깨어나게 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